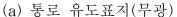
C - 91 - 2015

(19) 밀폐된 공간 또는 조명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장에 설치하는 유도 표지는 상시 조명 또는 비상 조명이 제공되도록 하고, 「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기준(NFSC 303) 제8조」에 따라 주위 조도 0 lux에서 60분간 발광후 1 제곱미터 당 7 밀리칸델라 이상의 밝기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, 직선거리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식별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.







(b) 피난구 유도표지(유광)

<사진 5> 통로 유도표지 설치 사례

- (20) 설계에 반영되었던 피난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공사 중에도 근로자의 피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, 일시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피난안전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.
- (21)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피난계단은 항상 장애물이 없도록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(22) 상흥부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저흥부는 본 설계에 반영된 소방시설을 가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며, 저흥부의 외부 커튼월 등의 마감공사와 내부 칸막이 등의 마감공사가 완료된 층의 경우에는 본 설계에 반영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5.2 화재예방 준수사항

(1) 화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각 분야별 관리감독자는 <별지 1>화기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부서장에게 검토를 받고 안전보건총괄